# (건축-007) 재건축 건물 철거현장 붕괴사고

공사명	○○○번지 지구단위계획부지			
사고일시	2018년 6월 16일(토) 9:26분경		기상상태	맑음
소재지	서울시 동작구	사고 종류	무너짐(붕괴·도괴)	
구조물 손실	슬래브 및 벽체	인적피해	부상 1명	
장비 손실	-	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	해당( ),	해당없음( 〇 )

# 가. 사고개요

## 1) 공사개요

공사종류 : 판매시설공사기간 : 2017.5∼

## 2) 사고경위

○ 옥탑 및 5층 일부를 철거 후, 건축물 후면에서 백호로 4층 슬래브, 거더 및 보 철거작업 중 4층 슬래브 및 벽체일부가 하부로 붕괴되면서 일부 붕괴 잔재물이 도로측 방향으로 흘러내려 안전 가림막과 비계하부가 파손되고 주변 행인 1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음

#### 3) 사고원인

○ 기 철거된 잔재물이 건축물 4층 슬래브에 쌓여 외벽과 기둥에 횡하중으로 작용함으로써 철거 대상 건축물의 허용하중을 초과하여 붕괴된 것으로 추정

#### 나. 재발방지대책

- 구조물 해체공사 전에 설계 도면, 구조 계산서, 시방서, 공사비 내역서, 현장 설명서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를 필히 작성하여 담당직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대상 건물의 형태와 규모 및 부지, 공사 주변의 환경 조건,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, 처리장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, 경제성, 안전성, 환경영향 등을 검토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하고, 이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-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·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확인한 후 건물의 규모, 구조, 특징 등을 고려한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이 적정하게 선정되도록 해야 한다.



사고현장 위치도





